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교통국장)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이유

- 최근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대구시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조정, 감면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 개정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와 통행료 관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통행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감면대상 차량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
 - 전기자동차의 감면율 조정(100분의 100 → 100분의 50)
- 통행료 징수 등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 감면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안 부칙 제2조)
 -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감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규정에 대해,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통행료 감면 관련 대구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4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전기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였음.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 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조례의 적용대상 유료도로는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앞산터널로)와 범물~안심국도 간 4차 순환도로(범안로)이며, 타시도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현황을 보면 대구시와 광주시에서만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경우에도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수소차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전국 민자도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율 현황

구 분	대 구	서 울	부 산	인 천	대 전	광 주	고속국도
전기·수소차	100/100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50/100	50/100
하이브리드	60/100	"	"	"	"	50/100	미시행

- 대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수가 최근 5년간 3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유료도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액과 통행량 또한 매년 3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통행료 감면 증가에 따라 유료도로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절감 예상액이 연간 6.2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등 대구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짐.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자동차		1,178,353	1,190,154	1,219,196	1,211,095	1,230,183
환경친화적 자동차		27,881	37,344	47,632	63,449	84,394
환경친화적 자동차	하이브리드	21,274	26,026	34,936	46,946	59,676
	전기차	6,605	11,313	12,630	16,185	24,161
	수소차	2	5	66	318	557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비중(%)		2.4	3.1	3.9	5.2	6.9

※ 대구시 유료도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액 및 통행량 현황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1.6억 / 424만대	9.0억 / 110만대	10.7억 / 133만대	11.9억 / 181만대
범안로	10.3억 / 245만대	3.3억 / 62만대	3.9억 / 76만대	3.1억 / 107만대
앞산터널로	21.3억 / 179만대	5.7억 / 48만대	6.8억 / 57만대	8.8억 / 74만대

- 다만 시 재정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축소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감소하는 부분임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 제1호에서는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통행료 징수 등 위탁기관을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개정하였음.
- 안 부칙 제2조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감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유료도로 통행료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감면시한 종료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대구시 민자도로 운영현황**

○ 운영현황 : 2개소(4차순환도로 남동부 구간)

구 분	범 안 로	앞산터널로
위 치	범물 ~ 안심	상인 ~ 범물
규 모	· B=35~50m L=7,250m (교량 3개소)	· B=35~60m L=10,440m (터널5,304m, 교량 7개소)
사업기간	1997. 10. 22. ~ 2002. 8. 31. (4년 10월)	2007. 12. 24. ~ 2013. 5. 15. (5년 4월)
사업비	· 총사업비 2,243억 원 (민자 1,672, 시비 571)	· 총사업비 4,792억 원 (민자 3,524, 국 413, 시 855)
운영방식	· 방식 : 비용보전(SCS) - 통행수입대비 운영상 부족분 지원 = (원금+이자+운영비)-통행수입 · 기간 : 2012. 7. 1. ~ 2026. 8. 31.(15년)	· 방식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기간 : 2013. 6. 15. ~ 2018. 6. 14.(5년)
통행료	· 전구간(소형 600, 대형 800) · 삼덕(소형 300, 대형 400) · 고모(소형 300, 대형 400)	· 전구간(소형 1,700, 대형 2,400) · 상인↔파동(소형 1,000, 대형 1,500) · 파동↔범물(소형 600, 대형 900)
통행료 징수기간	· 2002. 9. 1. ~ 2026. 8. 31.(24년)	· 2013. 6. 15. ~ 2039. 6. 14.(26년)
계 획 통행량	38,682대/일('22년 기준)	96,089대/일('22년 기준)
실 통행량	47,548대/일('22년 기준) ※ 계획대비 122.92%	50,272대/일('22년 기준) ※ 계획대비 52.32%
통행료 수 입	139억원(`19년 기준) 132억원(`20년 기준) 141억원(`21년 기준) 84억원(`22년 기준)	194억원(`19년 기준) 191억원(`20년 기준) 199억원(`21년 기준) 203억원(`22년 기준)
운 영 사	대구동부순환도로(주)	대구남부순환도로(주)